

1. 개정이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등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안 제29조제3항제4호, 안 별표 8의3)

- 1) 현행 규정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규정하여 두 자녀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음
- 2)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자녀의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육의 우선 제공대상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개정함
- 3)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보육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어린이집 건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안 별표 1)

- 1)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는 보육 목적 외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가 제한됨
- 2)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 종합적인 보육과 양육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지자체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2)

- 1)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에서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어린이집 포함)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되, 조리사와 영양사의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

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
집은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함

- 2) 영양사와 조리사간 겸직을 허용한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100
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기준을 개정함
- 3) 어린이집의 영양사 배치기준에 있어 법률 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과 어린이집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관련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으로 명시(안 제35조의5제2항)

- 1) 현행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따른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
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2항은 사전 예탁기관을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
로 규정하여, 예탁기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 2)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서비스 제
공비용의 예탁·청구·지급·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기관으로서 유일성 등이 인정되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
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
회보장정보원을 예탁기관으로 명시함

- 3) 법 제26조의2,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탁 수행기관의 업무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제4호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자녀”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법 제33조의4에 따른 위생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다목과 같다.

제35조의5제2항 중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34조의2”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별표 2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양사

1)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원(「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인 경우에만한다)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2)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5)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카목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자녀”로 한다.

별표 9 제2호바목3)나)(2) 위반행위란 (2)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	총인원 명	1세미만 명	1~2세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시설·설비	보육실 m ²		조리실 m ²		목욕실 m ²	
	화장실 m ²		놀이터 m ²		사무실 m ²	
	양호실 m ²		대지 m ²		기타 m ²	
직원	총인원 명	보육교사 명	간호사 명	영양사 명	조리원 명	기타 명
예산	수입액 원		지출액 원		비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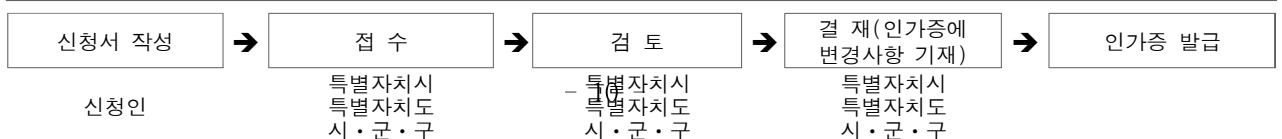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번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검 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결 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인가증 발급

첨부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u>경우에는</u>	----- <u>경우</u> -----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① (생 략)	②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
	---.

한다.

1. · 2. (생략)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
인서

③ ~ ⑦ (생략)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생략)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
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만 해당한다)

③ ~ ⑤ (생략)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 ②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
조-----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
조-----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
아를 말한다.

1. ~ 3. (생략)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
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 8. (생략)

④ (생략)

<신설>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
전 예탁) ① 삭제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2,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자녀-----

5.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법 제33

조의4에 따른 위생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다목과 같다.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
탁)

② -----

제34조의3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
원할 수 있다.

[별표 1]

1. ~ 2. (생 략)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
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다
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신 설>

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
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34조의2-----.

[별표 1]

1. ~ 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가. 일반기준

1)-----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

(이하생략)

[별표 2]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
과 그 수

가. ~ 다. (생략)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이하생략)

[별표 8]

1. 명칭

가. (생략)

나.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아종합지원센터

(이하생략)

[별표 2]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영양사

1)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원(「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인 경우에 한한다)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2)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이하생략)

[별표 8]

1. 명칭

가. (현행과 같음)

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 · 군 · 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생략)

2. (생략)

3. 안전 · 급식 및 위생관리

가. (생략)

나. 급식관리

1) ~ 4) (생략)

5) 원장등은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나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하생략)

[별표 8의3]

1.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가. ~ 차. (생략)

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안전 · 급식 및 위생관리

가. (현행과 같음)

나. 급식관리

1) ~ 4) (현행과 같음)

5) -----소비기한-----

-----.

(이하생략)

[별표 8의3]

1.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이하생략)

[별표 9]

1. (생략)

2. 개별기준

가.~마. (생략)

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
기준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 제44
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
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 ~ 2) (생략)

3) 별표 8 제3호를 위반한 경우

가) (생략)

나) 법 제33조 및 별표 8 제3호나목
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생략)

(2)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
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이하생략)

(이하생략)

[별표 9]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마. (현행과 같음)

바. -----

1) ~ 2) (현행과 같음)

3) 별표 8 제3호를 위반한 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

(1) (현행과 같음)

(2) 소비기한 -----

(이하생략)

[별지 제4호서식]

※ 표 하단 일부 발취(그 외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별지 제6호서식]

※ 표 하단 일부 발취(그 외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 표 하단 일부 발취(그 외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별지 제6호서식]

※ 표 하단 일부 발취(그 외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1의2.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한다.

2.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1)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4)가)②(ii)에 따라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나)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거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양 시설의 공간을 분리할 것

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대비시설 또는 전기·가스·수도 계량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사용할 것

3)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이어야 한다)이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전체 또는 1층[4)가)②에 따른 1층을 말하며, 같은 ② (i)의 경우를 포함한다]만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4)바)①에 따른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②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ii) 건물 전체[1)의 단서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층은 제외한다]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iii)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

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

(iv)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i)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2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ii)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1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등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③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④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⑤ 어린이집은 환기·채광·조명·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⑦ 그 밖에 보육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조리실

-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④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한다.

다) 목욕실

-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교사실

①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폼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및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를 설치하거나(다만,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인근의 놀이터(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 승낙을 받고,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i)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ii)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iii)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쥘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iv)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v)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아) 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i)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되,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ii)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안

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i)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건물 내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며(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건물의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하며,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방화관리를 할 것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보육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를 제외한다) 및 식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강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⑥ 저장장치는 영상정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질 기준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⑦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i)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
 - (ii)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 (iii)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⑧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차)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추 두어야 한다.
-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

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의 시설(놀이터는 제외한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경우에는 어린

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自在門: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 8)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본보육의 보육교사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연장보육의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 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1)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원(「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인 경우에 한한다)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2)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사.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

육교사의 경우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

1. 명 칭

가.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나.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어린이집의 운영

가. 반 운영

1) 어린이집은 같은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보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시간별로 반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의 비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

- 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休園)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3) 어린이집은 기본보육 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장보육 시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육 시간이 종료된 후부터 운영해야 한다.

라.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비용의 지출

- 1)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3)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4) 어린이집의 비용 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사. 보험(공제)가입

-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할 수 있다.
- 3)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4)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 두어야 한다(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4)·5)·6)·8)·9)·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 4) 예산서 및 결산서
- 5)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 10)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11) 통합안전점검표
-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자.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 1) 법 제28조 및 영 제21조의4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하여 입소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지원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안 된다.
- 4)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 어린이집 차량의 운행

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전자출결시스템의 설치·운영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 1) 어린이집의 원장은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 4)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 5)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 6)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7)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급식관리

-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2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3) 원장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현장학습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4) 원장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5) 원장등은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 6) 원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 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7) 원장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 8)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위생관리

- 1)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 어린이집의 먹는물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 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 5)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라.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6)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등원·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3)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제29조제4항 관련)

1.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같은 항 제5호·제14호·제16호에 따른 순직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사.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자.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 차.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하.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거.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적용 방법 및 기준

가. 입소 신청자가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한다.

라. 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법인·단체 등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가 우선하며, 협의한 일정 비율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한다.

마. 제1호거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하며, 협의한 일정 비율 이외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한다.

바.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1호			

가) 1천만원 이상		시설폐쇄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운영정지	시설폐쇄	
		1년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운영정지	시설폐쇄
		6개월	1년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운영정지	시설폐쇄
		3개월	6개월	
마) 1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운영정지	시설폐쇄
		1개월	3개월	
2)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1천만원 이상		시설폐쇄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운영정지	시설폐쇄	
		1년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운영정지	시설폐쇄
		6개월	1년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운영정지	시설폐쇄
		3개월	6개월	
마)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	운영정지	시설폐쇄
		1개월	3개월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법 제45조제			
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1항제3호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3개월	6개월	1년
2) 그 밖의 변경인가사항의 변경인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가.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 별표 1 제1호의2에 따른 재산요건을 위반한 경우 2) 별표 1 제3호가목4)아)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어린이집 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휴지기간 중 어린이집 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	1개월	3개월	6개월
		운영정지	운영정지	시설폐쇄
		2개월 운영정지	4개월 시설폐쇄	
		6개월 시설 폐쇄		
라.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이상 위반 나)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미만 위반 2)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법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	법 제45조제1항제3호	운영정지	운영정지	시설폐쇄
		1개월	3개월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보육교사는 제외한다)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3개월	6개월	1년
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			
1) 별표 8 제1호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2) 별표 8 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가)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시설폐쇄	
		1년		
나)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보육료 수납 납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다)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라) 별표 8 제2호사목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마) 별표 8 제2호아목에 따른 장부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바) 별표 8 제2호자목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 가)부터 바)까지의 운영기준 외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별표 8 제3호를 위반한 경우 가)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법 제33조 및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2)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3)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 (4) (1)부터 (3)까지의 급식관리기준 외의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별표 8 제3호라목에 따른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시설폐쇄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	---	---	---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2) 그 밖의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사.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아. 법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을 실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5일	1개월	3개월	
1)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법 제45조 제1항제3호
2)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다만, 제3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개월	2개월	3개월	
3)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자. 법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15일	1개월	2개월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5일	1개월	2개월	

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차. 법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받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1) 1천만원 이상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5) 1백만원 미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2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폐쇄 시설폐쇄
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5조			

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은 경우	제1항제1호의3			
1) 1천만원 이상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5) 1백만원 미만				
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이상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2)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미만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너.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1호의4			
1) 1천만원 이상		시설폐쇄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5) 1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더.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 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 1항제2호			
1) 3백만원 이상		시설폐쇄		
2) 3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러.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 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 1항제3호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 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 1항제3호			
1) 어린이집의 폐지		시설폐쇄		
2)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 및 재개		운영정지	시설폐쇄	

버.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법 제44조제7호의2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서. 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정보(영 별표 1의3의 공시정보 범위 중 같은 표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5개 이상인 경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정보가 5개 미만인 경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1)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2)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 가)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한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 법 제45조제1항제3호 법 제45조제1항제4호	1년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7일 시설폐쇄 시설폐쇄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년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1개월 시설폐쇄
---	---	---	--	---

가)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다)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법 제45조 제1항제5호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제38조 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법 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